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16
----------	-----

제안연월일 : 2020. 11.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 2021년 2월 설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지원(인건비 및 사업비 등)
-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
 - 평창군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사업비 지원
- 한국지방세발전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발전전략 제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
 -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
-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
 -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수행과 재단 경영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
-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비 출연
 -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 지역관광 진흥추진을 위한 운영비 출연

○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

-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출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발췌서 [별첨1]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 설계(안) [별첨2]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주관부서	행정과	'21년 출자예상액	100,000천원
------	-----	---------------	-----------

□ 출자대상

- 법인명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가칭)
- 일반현황
 - 설립예정 : 2021년 2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명칭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 형태 : 공단(시설관리)
 - 예산 : 인건비 등 5년간 대행 사업비 평균 약 2,183백만원
 - 조직 : 3팀(총 35명) ※ 정원 30명, 정원 외 5명
- 자본금 출자
 - 출자형태 : 평창군 100%
 - 규모 : 100,000천원
 - 연간 지출비용의 4.85% 수준, 연간 운영적자의 16.02% 수준, 총인건비의 7.43% 수준으로 유사 지방공단의 자본금 평균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설립 추진일정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20. 1. 29. ~ '20. 7. 7.
 -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및 검증심의회 : '20. 7. 7.
 -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 '20. 7. 23.
 - 강원도 2차 협의 : '20. 7. 27. ~ '20. 10. 16.
 -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20. 10. 8.
 - 조례제정 및 제 규정 작성 : '20. 8. ~ 2020. 10.
 - 임원공모, 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공단설립 등기 : '20. 10. ~ '21. 1.
 - 업무개시 : '21. 2.

□ 출자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출자대상 사업개요

- '21년 출자예정금액 : 100,000천원
- '21년 주요사업 내용
 - 수학아카데미아(2023 개장 예정)
 - 주요시설 : 수학체험관, 수학체험실, 연구소, 키즈카페, 미로공원 등
 - 사업내용 : 시설관리, 이용요금 징수 등
 - 평창자연휴양림
 - 주요시설 : 산림문화 휴양관, 숲속 체험관 12개, 캐러반 2개(2020년부터 운영), 바비큐장, 다목적운동장, 취사장 등
 - 사업내용 : 시설관리, 이용요금 징수 등
 - 계방산오토캠핑장
 - 주요시설 : 캐빈하우스, 통나무집, 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평상 및 벤치, 관리동, 안내쉼터, 공중화장실, 취사장 등
 - 사업내용 : 시설관리, 이용요금 징수 등
 - 평창공설묘원
 - 주요시설 : 묘역 1,140기, 봉안당 5,000기, 봉안담 926기
 - 사업내용 : 시설관리, 이용요금 징수 등
 - 대관령휴게소
 - 주요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캐노피, 휴게실, 매점, 기계실, 창고, 주차장 등 (직영시설 2, 임대시설 13)
 - 사업내용 : 시설관리, 이용요금 징수 등

□ 기대 효과

-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 공공성에 기업성을 도입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사업이윤 증대로 시설 개선 추진
- 매년 전문기관의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경영 합리화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

주관부서	기획실	'21년 출연예상액	50,000천원
------	-----	---------------	----------

□ 출연대상

- 법인명 :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원장 박영일)
- 일반현황
 - 개원 : '94. 9. 1.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 조직 : 1본부·5실·5팀·8센터, 현원 51명(정원 59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1년 출연예정금액 : 50,000천원
- '21년 주요사업 내용
 - 시 군별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
 - 시 군에서 요구하는 시군협력 정책 과제 건 시군협력 현안 과제 2건
 - 네트워킹 사업 주관
 -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내외 외부 기관과의 가교 역할
 - 시군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포럼, 정책콘서트, 세미나 등 개최
 - 시군 1:1 전담 서비스 제공
 - 지역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
 - 연구제안 행정사항 등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드백
 -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
 - 정부 및 강원도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 동향 모음집 제공
- 정부 및 강원도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정기 제공
- 주요공모사업 캘린더 제공(연초)

□ 출연 필요성

-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원 운영재원의 주 수입원인 수탁과제의 수입이 공개입찰 제도의 정착에 따라,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연구원 운영재원의 주요한 수입원인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기준 낮은 금리로 인하여 감소 될 것으로 예상
- 이외에도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 물가 상승 등의 지출 증가 요인이 있음
- 이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해 수탁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수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도정 지원 강화와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제13조(운영재원)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강원도

제4조(기금)

-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강원연구원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운영경비)

-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도 및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50,000천원

- 공모사업 동향 분석자료 제공(월 1회), 정책 연구과제 용역 수행(1건)
- 포럼·토론회 실시(2회), 수시과제·정책메모 수행(2건)
- 정책자문창구(코디네이터) 운영

□ 기대효과

- 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지원 활성화
- 정책변화에 선제적인 맞춤형 정책수립과 국책사업 발굴 확대
- 정책·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조사·연구로 군정지원 강화
-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강원포럼 등)
- 군민의 행복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정책 발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주관부서	재무과	'21년 출연예상액	4,208천원
------	-----	---------------	---------

□ 출연대상

- 법인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배진환)
- 일반현황
 - 설립일: 2011. 2. 28.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조직구성: 이사회, 기획조정실, 연구본부, 교육본부, 경영지원실
 - 운영인력: 77명(이사장 포함)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1년 출연예정금액: 4,208천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
- 사용용도: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등

□ 출연 필요성

- 지방소비세·소득세 확대 발전, 신규세원 발굴 준비
-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 산출기초

- 출연금 4,208천원 = 32,367,904천원 × 0.00013
 - 전전년도(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시행령 제94조)
 - ※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 공포예정(국무회의 의결 2020.9.1. 공포 9.8.(예정))

□ 기대효과

-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소비세 발전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지방의 관점에서 경제·사회 현상을 분석·연구하여 지방재정·세제의 역할과 방향 도출에 기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를 통하여 지방세의 비중 제고에 기여 등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

주관부서	교육체육과	'21년 출연예상액	1,030,000천원
------	-------	---------------	-------------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이사장 한왕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0. 8. 10.
 - 설립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기 구 : 이사회 10명(이사장 1, 이사 7, 감사 2)
 - 기금조성 : 75억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1년 출연예정금액 : 1,030,000천원
- '21년 주요사업 내용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 200명, 20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능
- 군민들의 자발적 기탁에 의해 장학기금이 확충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액보다 금액이 적어 군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
- 많은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학기금 출연이 필요
- 장학금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필요

□ 출연근거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장학기금의 출연)

- ① 군수는 장학회의 자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연차별 기금조성 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조성	연 차 별 조 성 목 표					비고	
			소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7,594	3,142	4,452	532	530	1,130	1,130	1,130	
군 출연금	5,490	1,740	3,750	330	330	1,030	1,030	1,030	
기탁금등*	1,562	860	702	202	200	100	100	100	

※ 기투자 기탁금 등 : 설립기금, 기탁금, 이자수입 포함

□ 출연 기대효과

- 장학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 나아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장학금 수혜범위 대폭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관내 인구증가 기여

평창군문화예술재단 출연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21년 출연예상액	1,058,691천원
------	-------	---------------	-------------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단법인 평창군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도영)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2. 11. 30.(도 설립허가 2012.11.21)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 평창군문화예술재단 2층
 - 기 구 : 18명(이사장 1, 이사 10, 감사 1, 직원 6)
 - 기본재산 : 1억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1년 출연금액 : 1,058,691천원
- '21년 주요사업 내용
 - 문화예술 육성지원, K-POP 아카데미 운영,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평창소년소녀합창단, 전시사업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전시시네마

□ 출연 필요성

-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등의 문화거점시설 운영활성화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복지 강화
-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허브 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특성화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 문화, 교육 욕구 충족
-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 및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 구현

- 군민의 주체적 인문 소비 촉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문화향유 사각지대에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욕구충족 기반 마련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체계 확립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 산출기초

- 출연금 : 1,058,691천원

가.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비 517,331천원

나. 평창문화예술재단 사업비 541,360천원

-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100,000천원
-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60,000천원
- 평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20,000천원
- K-POP 아카데미 운영 85,000천원
- 전시사업 활성화 운영 156,360천원
- 찾아가는 공연·전시·시네마 운영사업 12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평창군 문화예술교육, 창작지원 등을 통한 군민 문화역량 강화
- 군민 세대교류 및 일상축제, 공연전시 등으로 문화복지 실현
- 평창군문화예술재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양질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경영체계 확립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

관계법령 발췌서

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재산) 재단의 재산(제3회에서 “재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제6조(출연 등) ①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할 수 있다.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비 출연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21년 출연예상액	30,000천원
------	-------	---------------	----------

□ 출연대상

- 법인명 : (재)강원도 관광재단 (이사장 최문순)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20. 10. 13.
 - 설립형태 : 비영리재단법인
 -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민법 제32조
 - 소재지 : 춘천시 안마산로 89, 세종캐슬빌딩 3층(퇴계동)
 - 조직 : 3실 10팀(45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1년 출연예정금액 : 30,000천원(기본경비·사업비)
- '21년 주요사업 내용
 -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
 - 강원형 DMO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관광콘텐츠 발굴 및 통합 홍보마케팅
 - 스포츠관광 상품 및 스마트관광 개발
 -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등

□ 출연 필요성

-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군 통합형 관광전문기관으로서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 도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강원도 관광재단을 관내 관광산업의 전략적 추진기구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 산출기초

- 18개 시·군 각 30,000천원 동일

□ 출연시 기대효과

- 급변하는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능동적 대처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철저
- 도내 지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진흥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계법령 발췌서

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21년 출연예상액	200,000천원
------	--------	---------------	-----------

□ 출연대상

- 법인명 : (재)강원테크노파크(원장 : 김성인)
- 일반현황
 - 설립 : '03. 12. 24.
 - 설립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강원도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
 - 소재지 :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 조직 : 3단 3센터 1본부 2실 1협력관 21팀 112명
 - 주요기능 : 지역산업정책기획, 지역혁신거점사업, 신소재·방재 기술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 국제공동연구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1년 출연예정금액 : 200,000천원
-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 10백만원 이하, 기업 자부담 10% 이상
- '21년 주요사업 내용(7개 분야)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홍보 지원(홍보 및 홍보물 제작)
 -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 지원
 - 디자인개발 지원
 -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 공용장비활용 수수료 지원
 - 마케팅 역량 강화(워크숍 운영)
- ※ 지원대상 : 평창군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2020년 이내 본사 또는 공장이전이 확정된 중소기업

□ 출연 필요성

- 국내·외 시장개척,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가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평창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개선 및 마케팅 활동지원
→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출연 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강원도

제4조(재원조성)

-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강원도, 시·군의 출연금품

□ 산출기초

- 40개 중소기업 × 5,000천원 = 200,000천원

□ 기대효과

-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
- 전략산업 및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
-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체"로 본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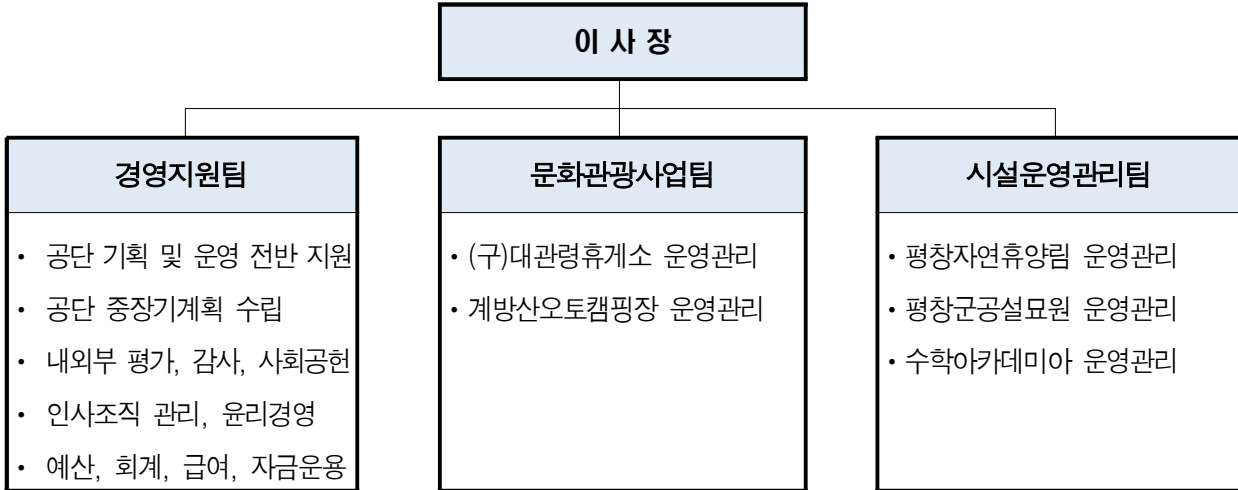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붙임 2】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 설계(안)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 설계(안)

□ 조직구성(안) : 3팀



□ 인력구성(안) : 35명(정원 30명, 정원 외 5명)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 설계(안) >

(단위 : 명)

구분	총원	정원	관리직		7급	8급	9급	공무직	정원외
			임원	6급					
계	35	30	1	3	3	4	7	12	5
경영지원팀	6	6	1	1	1	1	1	1	-
문화관광사업팀	18	15	-	1	1	2	3	8	3
시설운영관리팀	11	9	-	1	1	1	3	3	2

주1) 정원에는 임원과 일반직, 그리고 공무직이 포함됨.

주2) 관리직은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을 의미함.

주3) 정원 외는 기간제를 의미함.

시설관리 공단	직급	이사장	6급	7급	8급	9급
	직위		팀장	차장	대리	사원
공무원	직급	4급	6급	7급	8급	9급

주) 직급은 공무원의 직급체계와 동일함